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540
------------	------

제출년월일 : 2007.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등 급증하고 있는 거주외국인에게 기초생활 정보 제공·법률상담·보건 의료·근로상담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조기에 적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거주외국인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 다. 거주외국인 지원사항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한 안산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2조).
- 라. 안산시 다문화교류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4조)
- 마. 거주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 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 첨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센터건립비

- 3,301백만원(국비 200백만원, 도비 1,600백만원, 시비 1,591백만원)

외국인지원 사업비 (2007년 본예산)

- 226.7백만원(도비 27.5백만원, 시비 199.2백만원)

사전예고 결과 : 별첨

입법예고 : 2007. 2. 13. ~ 2007. 3. 5.(20일)

기타 참고사항

행자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의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거주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기타 한국어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6조(지원사업) ①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4. 보건의료
 5. 문화·체육행사 개최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장 안산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청·경찰서·지방노동청·출입국관리사무소·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 하고 있는 자
 2. 거주외국인·시의원·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 등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②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안산시 다문화교류센터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다문화교류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센터는 거주외국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 보건의료지원, 상담, 정보제공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운영) ①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센터의 시설, 이용방법, 운영시간 등 센터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5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제6조제1항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인의 날) ①시장은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안산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교류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교류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학술행사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서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대행할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시 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폐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산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명예시민) ① 시장은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외국인복지지원과
임 안 자	실·과 장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직위·성명	김 창 모
	담당·팀장	관리 담당
	직위·성명	김 영 국
	담당자 성명·전화	성 미 정 (행정 3301)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540
----------	------

제안년월일 : 2007. 4. 5.
제 안 자 : 경제 · 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안산시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를 안산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안산시 다문화교류센터의 운영주체 및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며, 일부 중복되는 내용 및 부적절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자

-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고, 안산시 외국인지원 시책자문위원회를 설치 · 구성하여 자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심의의 기능 까지 부여함.(안 제2장, 제7조제1항)
- 안산시 다문화교류센터의 운영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단서 조항에 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제1항)
- 거주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 운영함(안 제15조 제1항, 동조 제2항)
- 소관업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지원시 사업에 필요한 비용 까지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부 수정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제2항, 동조 제4항)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거주하며”를 ”거주할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타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안산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안산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문”을 “자문·심의”로 하고, “안산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를 “안산시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설치”를 “설치·운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를 내지 제21조를 제16조 내지 제22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 지원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거주외국인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운영비”를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생략)</p> <p>1. (생략)</p> <p>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u>거주하며</u>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p> <p>3. (생략)</p> <p>4.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원안과 같음)</p> <p>1. (원안과 같음)</p> <p>2.<u>거주할 목적으로</u>.....</p> <p>3. (원안과 같음)</p> <p>4. (원안과 같음)</p>
<p>제6조(지원사업) ① (생략)</p> <p>1. ~ 5. (생략)</p> <p>6. <u>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u></p> <p>② (생략)</p>	<p>제6조(지원사업) ① (원안과 같음)</p> <p>1. ~ 5. (원안과 같음)</p> <p>6. <u>기타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원안과 같음)</p>
<p>제2장 <u>안산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u></p>	<p>제2장 <u>안산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u></p>
<p>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자문하기 위하여</u> <u>안산시외국인지원자문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제7조(설치 및 기능) ① <u>자문 · 심의</u> <u>안산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u>.....</p>
<p>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다문화교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u>설치</u>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단서 신설 ></u></p> <p>② (생략)</p>	<p>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u>설치</u> <u>· 운영</u> <u>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u> <u>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u> <u>할 수 있다.</u></p> <p>② (원안과 같음)</p>

원 안	수 정 안
<u><신 설 ></u>	<p><u>제15조(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u> ① <u>시장은 필요</u> <u>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 지원</u> <u>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u> <u>하여 거주외국인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을</u> <u>추진 할 수 있다.</u></p> <p>② <u>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 <u>규칙으로 정한다.</u></p>
<u>제15조 (생략)</u>	<u>제16조(원안 제15조와 같음)</u>
<u>제16조(업무의 위탁)①(생략)</u>	<u>제17조(업무의 위탁)①(원안 제16조제1항과 같음)</u>
② <u>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u> <u>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u> <u>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③ <u>(생략)</u>	②.....소요되는 비용..... ③ <u>(원안과 같음)</u> ④ <u>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u> <u>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u> <u>따른다.</u>
<u>< 신 설 ></u>	
<u>제17조 (생략)</u>	<u>제18조 (원안 제17조와 같음)</u>
<u>제18조 (생략)</u>	<u>제19조 (원안 제18조와 같음)</u>
<u>제19조 (생략)</u>	<u>제20조 (원안 제19조와 같음)</u>
<u>제20조 (생략)</u>	<u>제21조 (원안 제20조와 같음)</u>
<u>제21조 (생략)</u>	<u>제22조 (원안 제21조와 같음)</u>